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군의 정통성을 명확히 규정〉

■ 부승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80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부승찬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14.
3. 회부연월일 : 2024. 10.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제1조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함. 이어서 제74조제2항에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이에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군대임.

그런데, 헌법 제74조제2항에 근거하여 국군의 조직과 편성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국군조직법」은 그 정통성의 근거에 관해서 밝히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국군의 역사성과 역할, 국민의 군대로서의 지위 등 그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헌법에 따라 조직과 편성 등 국군의 근간을 정하는 「국군조직법」에 국군의 정통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대한민국헌법」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규정이 「국군조직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국군조직법」에 국군의 정통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u>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로서 국방의 -----.</u>

- 현행법 제1조는 1963년 개정 이후 변경된 적은 없으며¹⁾, 「대한민국헌법」²⁾(이하 “「헌법」”이라고 함)에 명시된 국민주권 및 임시정부 법통 계승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

1) 「국군조직법」(법률 제 1343호, 1963.5.20. 전부개정)第1條(目的) 이 法은 國防의 義務를 수행하기 위한 國軍의 組織과 編成의 大綱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2)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국군은 의병-독립군-한국 광복군(이하 “광복군”이라 함)으로 이어 오는 정통성을 갖고 있는 국민의 군대임³⁾⁴⁾.
- 이에 개정안은 국군의 정통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역사성과 국민의 군대로서의 지위를 더욱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 조직을 설치하는 조직법의 목적규정은 「헌법」이 조직(기관)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공통적이고 단순한 법기술(法記述)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국군의 역사성과 역할 및 지위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술한 개정안은 통상의 법 형식에 반한다는 입장임.

[「헌법」에 직접 근거한 법률 중 일부의 목적규정]

법률명	조문 내용
「정부조직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u>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u>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u>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u>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원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u>필요한 사항을 규정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u>조직과 직무를 규정함</u> 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u>필요한 사항을 정함</u> 을 목적으로 한다.

3)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다만, 최근 육군사관학교에서 독립군과 광복군 출신 독립유공자의 흉상 이전에 대한 논의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 참고로, 「헌법」에 직접 근거한 조직법 중 「지방자치법」, 그 외 「헌법」에 직접 근거한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목적 규정에 의의 등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헌법」에 직접 근거한 법률 중 목적규정이 상세히 규정된 법률]

법률명	조문 내용
「지방자치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u>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공직선거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u>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
「근로기준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u>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 따라서 국군의 정통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함께 국방부의 입장, 「헌법」에 직접 근거한 기존 법률 목적규정의 예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10